

第144回國會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17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1月15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幹事選任의件
2. 日海財團調查關聯證人採擇및聽聞會開會에관한件

審査된案件

1. 幹事選任의件.....2面
2. 幹事(崔洛道)人事.....2面
3. 日海財團調查關聯證人採擇및聽聞會開會에관한件.....2面

(11時28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議時間이 豫定時間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委員을 오래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次 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동안 委員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 國會가 聽聞會를 導入해서 우리 議政史上 최초로 聽聞會에 의한 調查活動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委員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치렀습니다.

아마 이 委員長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聽聞會制度를 導入함으로써 이 나라에는 새 政治의 時代가 導入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國民이 여기 저기서 안방에서 지켜 보시는 가운데 우리들은 主人公이 되어서 聽聞會를 긴 시간동안 그런대로 成功的으로 치루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聽聞會를 치루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더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5共特委가 聽聞會를 잘 치룸으로써 이제 이 나라에 政治的 聽聞會制度가 着根이 되었다 이런 판단도 해 보면서 우리 5共의 聽聞會를 통해서 舊時代 清算이라는

어떤 國民과의 時代的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特委가 꾸준히 調查 追跡해 오던 日海財團의 調查가 거의 이제 전부 정리가 되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과 상황속에서 우리 委員 모두가 합심단결해서 舊時代 清算이라는 그 時代的 要請에 잘 부응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결론을 가져 오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立法調查官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查官 趙南樂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基澤 報告事項 가운데 새로 本委員會에 金令培委員 朴相干委員 梁性佑委員 李東根委員 崔洛道委員 이 다섯 同僚委員들이 補任되어 왔습니다.

먼저 人事하는 順序가 되겠습니다.

金令培委員부터 일어나셔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令培委員 平和民主黨所屬 金令培委員입니다.

오늘 17次 會議에 처음 들어온 新入生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第5共和國非理調查特別委員會가 해야 되는 과거의 우리가 진흙밭에서 굳어진 그 더러운 진흙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民主社會를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막중한 所任을

가진 委員會 活動에 임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李基澤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각별한 指導鞭撻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朴相千委員 일어나서서 人事해 주십시오.

○朴相千委員 平和民主黨의 朴相千委員입니다.

저는 이 5共非理의 剔抉이 아주 現實의 으로 볼 때 우리의 國民的 統合意識과 法에 대한 尊重心을 일으켜 세우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障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共非理의 剔抉作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政黨의 利益보다는 13代國會 全體의 使命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할 작정입니다.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梁性佑委員 일어나서서 人事해 주십시오.

○梁性佑委員 梁性佑입니다.

國民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經驗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指導鞭撻을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환영합니다.

李東根委員 일어나서서 人事해 주십시오.

○李東根委員 平和民主黨의 李東根입니다.

유능하신 先輩님들이 많으신데도 막상 命을 받고 보니 두려움이 앞설 뿐입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님을 비롯한신 前任委員님들의 알뜰하신 指導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환영합니다.

다음 崔洛道委員 일어나서서 人事해 주십시오.

○崔洛道委員 崔洛道委員입니다.

이제 民主化 長程의 새 출발의 분기점에서 지난날을 우리가 되돌아 보고 清算해야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이 오게 되어서 참으로 떨리는 가슴입니다. 아무쪼록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指導와 鞭撻에 힘입어서 이 중요한 召命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崔洛道委員 환영합니다.

1. 幹事選任의件

(11時36分)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平和民主黨 本, 特委의 幹事選任의件을 議事日程으로 上程을 해서 幹事選任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平和民主黨에서 慣例에 따라서 幹事로 選任할 委員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崔洛道委員을 幹事로 추천을 하셨고 또 選任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異議없으시면 可決 宣布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幹事(崔洛道)人事

○委員長 李基澤 崔洛道 幹事委員 일어나서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洛道委員 초장부터 두번이나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共同善을 추구하는 입장은 輿野가 똑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입장에 있어서 서로 相異하기 때문에 앞으로 幹事會議를 통해서 여러 先輩 同僚委員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效率的으로 이 特委가 運營될 수 있도록 같이 研究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日海財團調查關聯證人採擇및聽聞會開會에관한件

(11時39分)

○委員長 李基澤 앞으로 새로 選任되신 崔洛道 幹事의 指導力量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정되었던 議事日程 第2項 日海財團調查關聯證人採擇및聽聞會開會에관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月 9日의 第5次 聽聞會에서는 鄭周永證人에 대한 證人訊問과 證言聽取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出席要求한 날이 子正으로 만료되는 관계로 또한 同 證人이 健康上 理由로 더 계속해서 證言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해와서 만부득이 會議次數를 변경하여 聽聞

회를 계속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1月10日의 4黨幹事會議에서는 15日 午前 10時 오늘 10시에 全體會議을 열어 日海財團關聯 追加證人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聽聞會 日字를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 9日 證人訊問이 끝나지 못한 鄭周永證人에 대하여는 11月15日 그날 11시에 聽聞會를 계속하기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오늘 全體會議에서 別途日字를 정하여 證人訊問을 마치도록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鄭周永證人으로부터 健康上的 이유로 해서 15日 오늘의 聽聞會出席이 무리라는 通知를 해 음에 따라서 어제 다시 4黨幹事모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日海財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11月28日과 30日 이틀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28日과 30日의 日字가 나온 것은 光州義舉事件特別委員會에서 18日 19日 24日 25日 4日間 聽聞會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言論統廢合聽聞會가 21日 22日 23日 이렇게 日字가 合意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중요한 國事는 우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幹事들 間에 原則을 정하고 日程을 잡다보니까 우리는 28日과 30日 이틀동안 하기로 되었는데는 것을 여러 委員들에게 報告말씀 드리고 그래서 11月28日 午前에는 鄭周永 現代會長을 證人으로 出席要求하여 證言을 聽取토록 하고 午後에는 鄭九鎬 前京鄉新聞社 社長 그리고 鄭壽昌 前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을 追加證人으로 채택 證言을 聽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月30日의 聽聞會에는 張世東 前大統領警護室長 그리고 鄭周永 現代 名譽會長의 證人出席을 요구하여 日海財團의 非理事件에 대한 調查活動과 聽聞會活動까지를 최종적으로 綜合整理하는 뜻에서도 이 두사람의 對質訊問은 그동안 서로 엇갈린 주장과 證言도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물론 우리 聽聞會에서 出席해서 證言한 스무분의 證人들 가운데서도 서로 엇갈리는 그러한 證言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크게 이 事件을 整理 마무리하는 단계에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國民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速記錄에 이미 모든 것이 지금 記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事務處에서도 整理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각 黨에서도 상당히 整理를 하고 계시리라 보기에 때문에 우선 이 두사람에 대한 對質訊問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合意를 보았습니다.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僞證 등에 관한 告發問題 이런 것은 지금도 아직 事務處에서 完결이 안된 상태이고 또 원칙적으로는 한 事件에 대한 聽聞會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事後處理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고 해서 이달말까지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報告말씀 드린 것이 4黨幹事間에 어제 合意한 것으로 本特別委員會의 聽聞會의 日程입니다. 특별한 異議가 없으면 우리 幹事會議에서 合意한 대로 채택을 해서 다음 聽聞會를 확정지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趙昇衡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예. 말씀하세요.

○趙昇衡委員 어제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사항에 관해서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幹事會議에서 未決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全體會議에서 일응 論議를 하고 그 可否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本委員이 어제 幹事會議에서 30日 對質하는 對象者를 정함에 있어서 張世東 鄭周永 그리고 梁正模 이 세사람은 적어도 3角對質을 하든지 두번 對質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무리 짓는데 좋겠다고 이렇게 提議를 했었습니다만 4黨幹事の 合意를 보지 못해서 결국 全體會議에 未決事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必要性을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난번 聽聞會에서 대강 정리된 것이 日海財團의 基金의 強制性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強制性을 證言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그 중간 어느 時點에서는 強制性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時點에서는 強制性이 있었

다 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個「그룹」의 代表者로 張世東 그리고 梁正模 鄭周永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어도 이 세사람에 대한 3角對質이라든지 아니면 2人씩의 對質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거쳐야 하겠다 라고 提議를 했었는데 合意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未決된 부분은 이 全體會議에서 可否決定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蓋澤 張慶宇委員 의견말씀 해보세요.

○張慶宇委員 어제 幹事會議를 한 것은 사실이고 또 本委員뿐만 아니라 우리 趙委員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統一民主黨의 姜信玉委員님도 新民主共和黨의 金炫委員님 다 같이 있었던 자리이고 또 委員長님께서도 合意되는 내용을 상당시간 지켜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趙委員님께서 張世東 鄭周永 또는 梁正模 또 그밖에 安賢泰 金麟培 여러분이 나오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最終인 合意를 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委員長께서 仲裁에 나서서 가지고 결론적으로 鄭周永씨의 證言과 張世東씨의 證言의 最終인 對質만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다 合意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고 또 우리가 최근부터는 幹事會議의 合意事項을 이렇게 記錄에 남기는데 그러가지고 각 幹事들이 合意事項 內容에다가 서로 署名捺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11月30日 聽聞會는 張世東證人と 鄭周永證人에 대한 證人採擇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合意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趙委員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委員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個別의 意見이 있지만 이미 4黨間에 交渉團體間에 협의에 의해서 이 委員會가 원만히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事項은 이미 合意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趙委員님께서 이점 양해하시고 合意된 대로 그냥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趙昇衡委員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大 提議는 철회를 하지 않는다 다만 4黨幹事 合意事項만 合意事項으로

이렇게 넘기고 未決事項은 本會議에서 토론이 되는 것을 前提로 해서 合意가 된 것입니다.

○朴相干委員 이 문제는 지금 募金の 強制性이 있느냐 없느냐를 규명하는데 證人 梁正模 씨를 추가해서 選任하느냐 안 하느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角度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張世東證人은 強制性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고 있고 鄭周永씨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밖으로 일부 強制性을 是認하는 發言이 있었다는 것 뿐이지 全體의 흐름을 보면 證人自身이 日海財團의 理事長을 맡고 있고 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強制性이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證人을 選任을 지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그 두분이 證言하는 것을 보아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7日前에 送達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이 會議에서 梁正模씨를 30日의 證人으로 採擇을 해두는 것이 우리 委員會가 제 役割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다른 議案과 달라서 募金の 強制性與否를 규명하는데 梁正模씨가 없어도 되느냐 있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強制性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證人이 없습니다. 완전히 否認하는 사람과 애매모호한 陳述을 하는 분과 두분밖에 없기 때문에 強制性을 주장하는 證人과 함께 採擇해서 그날 訊問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順理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蓋澤 李聖浩委員 말씀하세요.

○李聖浩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黨側의 幹事로 나가셨던 張慶宇委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事項 자체가 우리 4黨 幹事들이 앉아서 내용을 討論을 했고 또 뿐만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合意點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民主黨 幹事로 참여하셨던 姜信玉委員 또 新民主共和黨 幹事로 참여하셨던 金炫委員 또 委員長께서 어떠한

형태의 報告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아시는지 이 세분의 말을 우선 듣는 것이 順序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基澤 金 炫委員 말씀하세요.

○金 炫委員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들로 한정을 시키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趙委員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은 잠정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本會議 討論에 하나 우리 幹事가 合意하기까지는 들까지다 라고 合意를 했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것을 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本人이 얘기를 했던 것은... 잠정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지요. 어저께... 나간 뒤에는 會議가 없었을 테고...

○趙昇衡委員 撤回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金 炫委員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는 것이 趙委員 말씀대로 절대 撤回는 하지 않는다 잠정적으로 來日 本會議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合意를 한다라고까지 한 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저께 本委員이 얘기했던 대로 鄭周水씨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날 아프다고 갔는데 내일 診斷書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通報해줘 버리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專門委員이 받아가지고 온 날짜가 과연 28日인가까지 本人이 診斷書를 떼어서 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28日로 우리가 정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도 어저께 撞頭되었던 문제니까 4黨幹事가 얘기를 하라니까 그 문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命培委員 金命培委員입니다. 저는 5共非理特委가 與野間에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거나 各政黨間에 競爭的인 성격을 띠면 그러한 委員會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第5共和國때의 모든 非理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創建하느냐 하는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與野各黨間의 利害關係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니

다. 그러면 本事案에 있어서 日海財團의 基金造成에 있어서 強制性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朴相干委員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張世東씨는 전연 強制性이 없었다고 말했고 또 鄭周水씨는 편케 살려니까 냈다라는 間接的인 是認을 한 것 뿐입니다. 확연히 強制性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證人은 梁正模씨 한사람 뿐입니다. 그러면 本委員會가 強制性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 委員會인데 확연히 強制性이 있다고 證言한 그 證人을 再證言때에 부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本委員會가 國民에게 어떻게 비취질까 이것이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어떻게 議決이 될는지 그 결과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委員會나 아니냐 이것이 國民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 남겨둡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周委員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방금 우리 趙昇衡委員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聽聞會를 開催하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強制性이 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벌써 인식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8日 30日까지 聽聞會를 開催하기로 이렇게 幹事들간에 合意를 했다면 일단 그 중간에 지금 2·3日內로 긴급히... 긴급도 아닙니다. 우리 5共特委 全體會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全體會議에서 決議가 된 우리가 그 당시에 다른 證人들의 訊問을 해보고 채택하기로 한 金斗煥씨의 出席要求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可及的이면 幹事會議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2·3日內로 이제는 金斗煥씨가 日海財團을 「버마」 遺族들을 위하는 하나의 財團을 公益法人을 設立해서 무엇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 國民에게 밝혀졌으니까 이 문제를 幹事들이 可及的이면 與野間에 合意로써 이 金斗煥씨 出席

問題를 빨리 다뤄줘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委員長님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本 委員會가 行政府에 요구한 각종 資料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聽聞會만 의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빠른 時日內에 國務總理가 이 特委에 나와서 各 行政府에서 주고 있지 않은 각종 證據 이 資料要請한 것을 빨리 촉구하는 이런 會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현재 全斗煥씨가 日海財團에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아는 證據가 뭐냐하면 財務部에 요청해 놓은 80年度 이후의 損費處理現況입니다.

이것도 本委員會에서도 요구하고 調查班에서도 再促求해 놓았음니다마는 아직 政府에서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幹事會議는 全斗煥씨의 出席時期 문제 全斗煥씨가 聽聞會나 特委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全國民의 바램이고 與·野委員의 큰 異見이 없을 것입니다. 이 時期를 빨리 幹事會議에서 決定해 주고 방금 趙委員께서 말씀하신 梁正模씨의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날 鄭周永씨하고 鄭九鎭씨고 鄭壽昌씨가 하루가 되고 張世東씨 鄭周永씨 두 사람에다가 梁正模씨를 한사람 더 넣는다고 하던 聽聞會日字는 이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梁正模씨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한번더 對質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聽聞會가 우리가 지난 번에도 鄭周永씨같은 사람들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聽聞會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梁正模씨의 出席問題는 幹事들하고 委員長에게 우리가 全權을 委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表決에 붙인다고 하면 저는 梁正模씨가 나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表決에 붙여야 될 중요한 문제는 國務總理 다음에 出國停止를 시키지 않고 있는 法務部長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全斗煥씨의 出席問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幹事들 間에 정 합의가 안될 때는 全體會議에서 다루어야 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幹事도 새로 選任되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姜信玉委員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姜信玉委員 저 이야기는 들어서 뭐합니까? 合意는 이렇게 됐고 지금 追加로 한사람 더 하자는 이야기인데……

○趙昇衡委員 追加가 아니라 애당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안된 것을 本會議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姜信玉委員 글쎄 그러니까 證人申請을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證人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證人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平民黨에서 梁正模씨가 나와야 募金의 強制性與否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梁正模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金委員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強制募金은 거의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梁正模씨도 證人으로 나와서 할 말을 분명히 다 했습니다. 다시 와서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強制募金與否를 가리기 위해서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 와서 밤새도록 몇시간 동안 자기가 분명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對質해서 나올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은 그래서 적어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본다면 역시 핵심적인 張世東씨 鄭周永씨가 마지막 와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합의했는데 梁正模씨가 굳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가만히 계세요. 發言申請者가 많아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事案을 놓고 좀 異見이 있는 것은 우리가 時間을 가지고 討論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討論되고 있는 문제는 어제 幹事會議에서 合意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梁正模씨가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그것을 梁正模씨가 다음에 더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委員도 계시고 꼭 나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委員도 제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제 幹事會議에서 合意가 두 사람으로서 「최스」가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梁正模씨는 여기 와서 다시 우리 全體會議에서 討論하도록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委員長으로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委員會會議이 이제는 國政監査 豫算審議 거의 끝나고 필요하다면 우리 本會議도 거의 매일 해야 되고 幹事會議도 여기에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討論하고도 다른 問題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 幹事會議에 넘겨주면 충분히 조정해서 2·3日 時間이 더 있으니까 28日로 잡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맡겨주시면……

○趙昇衡委員 합의가 안 된 것을 뭐하러 맡 집니까?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우리 幹事들한테 안 맡겨 주시고…… 趙委員님 너무 그렇게 속단 하시지 말고 또 幹事會議라는 것이 하다보면 합의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林春元委員 말씀하세요.

○林春元委員 물론 委員長께서 會議를 能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幹事會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幹事會議에서 이미 걸려서 거기서 合意가 안되어서 우리 本會議에 온 문제이고 또 이 문제가 全體委員들이 梁正模씨를 證人으로 採擇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다시 또 幹事會議 넘기고 뺏하고 할 그럴만한 사유가 아니니까 이것 한사람 더 넣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또 幹事會議에 끌고 가고 왔다갔다 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사람 더 여기서 추가해서 넘어가는 것이 順理라고 봅니다. 이 梁正模씨를 한사람 더 추가해서 證人으로 採擇하려고 하는데 反對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委員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本會議에서 案件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決定을 해 주시고 다른 事案이 또 나와서 幹事會議에 넘기는 것은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저께 幹事會議 이미 해서 本會議에서 結論

짓기로 한 것을 또 幹事會議에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結論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張慶宇委員 말씀하세요.

○張慶宇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꼭 錄音을 해놓고 하기 전에는 立證하기 어려운데 보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어제 네분이 있었고 委員長님도 계셨기 때문에 委員長님이 여러가지 상황 때문이신지 아니면 本人의 기억이 확실치 않으신지 모르지만 글세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명확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희 議事日程과 案件의 上程關係는 지금까지 그래도 與野間의 幹事會議를 통해서 꼭 확정을 하고 그대로 대충은 진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第1次 28日에 나오는 鄭周永씨는 이미 鄭周永證人에 대한 質問終結을 宣言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有效한데 다만 召喚狀을 지난 9日 하루만 띄었기 때문에 本人의 健康上 이유로 우리가 바로 要請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15日 出席해 달라고 1次 宗용을 하고 자진해서 15日 出席이 안되는 경우 그때 다시 召喚狀을 띄워서 맞추는 것으로 合意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더 필요한 追加證人을 採擇을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중에서 우리 趙昇衡委員님께서 처음에 鄭壽昌 鄭九鎭證人을 採擇했던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제가 鄭九鎭證人을 採擇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했더니 나름대로 狀況說明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뒤늦게 나는 鄭壽昌은 削除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鄭壽昌證人을 4日 間에 걸친 證言聽取를 하다가 보니까 鄭壽昌證人에 관련된 內容이 너무 많이 나오니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 까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더니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부분은 일단 넘기고 가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29日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하면 張世東 鄭周永, 張世東 梁正模, 鄭周永安賢泰, 金麟培 鄭周永, 李垓鎔 鄭周永, 崔順達 鄭周永, 李垓鎔 梁正模, 金基桓 鄭周永, 崔順達……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의연한 자세로 興黨에게 택일을 시킬 테니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육신각신하다가 결론은 우리 委員長께서 자 이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대충 결론이 난 문제니까 더 證人을 採擇해서 사실은 對質까지도 거의 필요없다 그러니 1次 證人만 끝내고서도 가능한데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초점은 張世東 證人과 鄭周永 證人의 상반된 證言이 제일 문제시 되고 있으니 이 부분만이 對質이 필요한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合意書의 문장을 쓰고 여기에 書名捺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幹事合意事項이라는 題目으로 되어 있고 여기 書名이 되어서 은 記者들까지 다 公開되어 이미 나간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와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梁正模 證人을 採擇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택할 필요가 있으면 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幹事合意가 내용이 이렇게 정해져 나왔기 때문에 可及의이면 幹事合意 내용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대로 이것은 採擇을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우리 원만한 會議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梁正模 證人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하니까 그렇다면 다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幹事會議를 통해서 했던 것이니까 다시 그 문제에 관해서 論議를 하자면 論議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合意事項은 어디까지나 合意대로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委員長께서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宣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趙委員 말씀하세요.

○趙昇衡委員 자세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世東 鄭周永 對質과 張世東 梁正模 對質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의 對質을 제가 提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 안해도 좋은데 張世東 鄭周永 梁正模 아까 설명하다시피 그 必要性을 否認하는 사람 是認하는 그 中間인 者 이렇게 세 사람의 三角對質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루어

져야 하겠다 그래서 三角對質이 필요한데 幹事會議場所에서 合意할 수 있는 것만 合意를 하고 나머지는 本會議에 未決인 채 넘기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제가 적어도 幹事會議에서는 未決이지만 合意가 안되었지만 내가 요청한 梁正模에 대해서는 幹事會議場所에서 撤回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몇차례 했습니다. 결코 나는 撤回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분은 共和黨幹事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점을 기억에 넣으신다면 바로 기억이 될 것이예요.

○委員長 李基澤 崔洛道委員 말씀하세요.

○崔洛道委員 지금 幹事會議 決定事項에 대해서 政黨間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幹事會議에서 決議가 안된 합의가 안된 것을 미진한 채 놔두겠다고 한 趙昇衡委員 말에 대해서 또 新民主共和黨의 金炫 幹事께서도 뒷받침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幹事會議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서로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했느냐를 이 자리에서 是是非非를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幹事會議에서 그런 것을 決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때 왜 決議해 놓고 지금 없다고 그러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자 그것을 확인해 보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幹事會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論議하자고 한 것은 本委員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他黨幹事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幹事會議에서 미진한 부분 梁正模씨 證人問題에 대해서 더 論議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幹事會議에 이것을 미루자고 했는데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우리의 友黨인 民主黨도 金東周委員께서는 梁正模 證人을 다시 부르는 것이 좋다고 했고 姜信玉 幹事께서는 이미 梁正模씨가 強制募金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公知의 사실이기에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幹事와 所屬委員間에 의견이 서로 다르게 이 자리에서 개진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幹事에게 일임해 버리면 梁正模證人을 採擇해야 된다고 하는 委員의 주장은 가려져 버립니다. 따라서 幹事間에 다시 이것을 미루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梁正模證人을 꼭 내세워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李聖浩委員께서도 張慶宇委員이라든지 또는 金炫委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姜信玉民主黨幹事에게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했읍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相反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姜信玉委員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張世東證人은 強制募金한 사실이 없다고 그리고 있고 鄭周永證人은 強制募金을 당한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李聖浩委員이나 金炫委員이 그렇게 말한데도 불구하고 姜信玉委員에게 꼭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한 이유중의 하나가 明明白白히 확실하게 제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強制募金의 與否는 鄭周永씨 하나만이 아니라 梁正模씨도 여기에 대해 對質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鄭壽昌씨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데 鄭壽昌씨는 실지로 募金을 했던 當事者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強制募金을 했소 하고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鄭壽昌씨도 強制募金하지 않았다 張世東씨도 強制募金하지 않았다. 鄭周永씨만 애매모호하게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強制募金을 否認하는 證人은 둘이 나오고 그것을 애매하게 是認하는 證人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소위 衡平上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梁正模도 같이 證人으로 되어야만 이것이 되겠다 이런 뜻에서 幹事會議에서 다시 다루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것을 論議하고 넘어가야 效率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本委員은 말씀드렸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朴進球委員 말씀하세요.

○朴進球委員 저는 梁正模씨 한분이 證人틀에 다시 나오고 안나오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與黨人들 梁正模씨 나온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初選으로 들어와 가지고 特委에 와서 꼭 보니까 委員長을 中心으로 해서 幹事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순조롭게 會議을 잘 진행했는데 그러면 이런 事項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本會議에 上程해서 하겠다면 좋습니다. 저는 異議가 없습니다.

그러나 會議은 역시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幹事會議한다 그래서 28日이니까 1週日前에만 하면 되니까 그동안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 온 運營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周委員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그렇습니다. 방금 崔洛道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幹事會議을 委員이 전체가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政治的인 「게임」이지만 또 간혹 委員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本委員은 梁正模씨가 다시 나와서 우리가 5共非理證據調查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왕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日海非理調查는 이제 윤곽이 남니다. 나면 全斗煥씨 出席問題는 어제 幹事會議에서 왜 論議를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全斗煥씨가 나와야 됩니다. 이 시점에는……

그러니까 聽聞會日字를 다시 조정을 하시든지 이래서 이번에 日海財團關係는 장본인인 全斗煥씨까지 같이 출석을 나는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梁正模 全斗煥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끝을 내고 우리가 지금 현재…… 與黨側에서도 지금 현재 年內에 5共非理를 다 끝내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빨리 끝내고 다른 案件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미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제가 아까 우리 趙委員보고 제가 趙委員 참 존경합니다. 이래서 修正하고 싶어하는 動議案을 낸다 하는 것은 梁正模를 한 사람 더 넣고 거기에 全

斗煥씨가 같이 넣어 가지고 日海財團에 관계되는 聽聞會는 이번으로써 끝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44個의 案件이 1次 案件 아닙니까? 그 많은 非理를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民들은 檢察이나 國稅廳에서…… 檢察搜查에 대한 불평이 대단합니다. 오히려 親戚戚들 拘束시키는 과정에서 또 外國에 현재 도망간 사람들 이런 문제를 빨리 감시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國稅廳의 稅務查察도 걸할기로 한다는 提報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더 發展의으로 하기 위해서 結論의으로 말을 정리하자면 梁正模씨도 出席을 시키고 마지막에 斗煥씨까지 出席要求를 저는 勸議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令培委員 말씀하세요.

○金令培委員 될 수 있으면 發言을 안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습니다마는 또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幹事會議의 合意事項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幹事會議 合意事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관례에 의해서 합의된 것은 다 承服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拘束力은 갖지 아니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平和民主黨所屬 幹事로 나가셨던 분은 합의해 준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합의가 됐든 안됐든……

○趙昇衡委員 합의해 주었어요. 다만 未合意事項은 全體會議에 당연히 넘어가는 것 아닌가…

○金令培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저를 비롯해서 다섯 委員이 새로 들어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所屬委員 일곱名 가운데 다섯名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 5共特委에 대한 여러 가지 말 많이 듣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입장에서 볼 때 張世東씨와 또 다른 누구와의 對質審問을 한다 하는 것은 張世東씨가 強制性이 없고 自由意思에 의해서 돈을 냈다 이것을 뒤엎기 위한 목적으로 對質審問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그러시겠습니까마는 모든 國民은 言論에서도 비쳐진 바와같이 지난 聽聞會에서 日海財團基金은 強制性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張世東씨는 強制性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을 뒤엎기 위한 목적의 對質審問이다 그러면 나머지 證人中에서 가장 강력하게 強制性이 있었다고 말한 梁正模證人을 對質審問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과연 5共非理調查特委나 5共非理隱蔽特委나 國民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 비판할 여지가 있다 이런 問題點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委員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결론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議事進行發言으로 얻었기 때문에 委員長님께 요청합니다마는 여기에서 幹事會議에서 누가 어떻게 했네 어떻게 했네 이런 것을 세세하게 까발리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앞으로의 本特委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停會해서 幹事會議에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잘 안되면 表決하는 수 밖에 없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委員長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李聖浩委員 議事進行發言 해주세요.

○李聖浩委員 지금 金令培委員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日海財團에 대한 設立背景이나 資金造成過程에 대해서 나홀에 걸쳐서 聽聞會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聽聞會를 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그동안 幹事會議에서 어렵지만 전부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를 최대한 존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느 委員이 日海財團에 관한 문제를 隱蔽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隱蔽하고자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實體의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혹시 證人間에 證言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것을 확연히 어느 것이 사실이나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對質證人採擇의 문제가 幹事會議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홀씩 했기 때문에 보다 效率的이고 분명하다는 뜻에서 아마 이것이 幹事會議에서 合意를 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幹事會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성격 規定을 해야 하는데 幹事會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各黨의 委員을 대표하고 뿐만 아니라 各黨의 委員의 意見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제 앞에 있는 幹

事會議 合意事項을 보면 분명하게 合意事項이 표현돼 있고 참여했던 幹事委員들이 「사인」까지 했습니다. 署名까지 한 것을 봐서 현재 證人採擇이 本 委員會에서 이렇게 具體的으로 몇 사람이 다시 論議가 되는데 이 문제를 지난 우리가 聽聞會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보았듯이 幹事會議에서 많은 것을 論議했고 결정에 우리가 준수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金 命培委員 發言하신 것을 저도 같은 맥락에서 停會를 하고 다시 幹事會議에서 協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崔戊龍委員 議事進行發言하세요.

○崔戊龍委員 지금 일단 幹事會議에서 出席人員이 결정된 것이죠. 이외에 梁正模證人을 출석시키는 여부에 관해서는 幹事會議에서 그것이 梁正模證人을 출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도 결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일단 證人 결정이 幹事會議에서 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이외에 梁正模證人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全體會議에서 거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설혹 幹事會議에서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全體會議에서 鱗意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梁正模證人 出席여부는 全體會議에서 거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盧武鉉委員 議事進行發言하세요.

○盧武鉉委員 議事進行發言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梁正模證人이나 새로 다시 修正提議된 全斗煥證人의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委員長님께서 먼저 上程했던 이미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證人部分에 관해서는 일단 通過를 시킨 다음에 새로이 梁正模와 全斗煥에 대한 것을 動議案으로 성립시켜서 決議를 하든지 그것을 幹事會議에다가 回附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 것부터 通過시켜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昇衡委員 그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30日 日程은 단순한 證人訊問이 아닙니다. 個別訊問이 아니고 對質訊問이고 이것을 三角對質을 해야 할 것이냐 2人 對質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28日 日程은 幹事合意대로 通過시켜도 좋은데

30日 日程은 그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다만 그중에 두 사람만 合意가 된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결국 全體的인 결정은 證人에 관해서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조금 전의 本委員의 議事進行發言에 관해서 趙昇衡委員께서 이것은 따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議事進行에 관해 發言을 한 사람으로서 意見을 다시 提示하겠습니다.

적어도 2者對質일 수도 있고 3者對質일 수도 있는데 그 2者對質을 하고…… 일단은 2者對質은 幹事會議에서 合意가 된 것입니다.

된 것이니까 그것 通過시키기도 다음 3者對質의 必要性與否는 다음 案件을 討議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者對質部分이 결정되고 한분이 더 끼면은 그 부분 2者對質이 따로 되고 또 3者對質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추가해서 2者對質을 3者對質로 性格變化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데에 불과하니까 굳이 이것…… 이미 決定된 부분 하나 하나 處理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崔浩道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조금 전에 金東周委員께서 梁正模씨와 全斗煥씨를 追加로 證人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動議案을 發議했습니다.

따라서 이 動議案이 成案됐는지의 여부를 委員長께서는 물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金東周委員께서 張世東 鄭周永의 對質審問以外에 梁正模씨도 추가하고 또 全斗煥씨도 마저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正式으로 動議한 것으로 本委員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修正動議를 지금 金東周委員이 했기 때문에 動議案과 修正動議案에 대해서 成案與否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선 停會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처리한다든지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停會해야 될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알겠습니다.

우리 委員會 會議의 慣例가 주요한 議題일 수록 事전에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幹事會議를 거쳐서 4黨이 됐든지 3黨이 됐든지 우리가 合意點을 導出하려고 討論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本 會議까지 議題가 上程되는 것은 극히 常識的인 우리 會議

進行慣例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崔洛道委員 質問에 대해서도 全斗煥씨 우리 本 特委의 出席問題는 지난 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動議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事案인 것만은 누구도 否認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會議進行의 慣例를 너무 제쳐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動議로서 뭔가를 처리하기 보다는 金東周委員이 動議를撤回해주시면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梁正模씨의 對質審問 出席與否問題와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幹事會議을 지금 停會를 하고 나서 해야 아니되겠습니까?

동시에 全씨 問題도 함께 論議하도록 하고 1時까지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34分 會議中止)

(13時1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아까 午前이 되겠지요. 議事進行 과정이 28日 30日 聽聞會 日程을 정하고 30日 對質訊問者 鄭周永씨 張世東씨 이렇게 결정을 하려던 참에 梁正模씨를 추가해서 3者 對質하자는 것으로서 停會까지 이르고 이제 續開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梁正模證人의 對質訊問 證人採擇問題에 관해서는 幹事會議를 조금전에 원만하게 마쳐서 11月30日의 聽聞會에 出席하도록 그래서 對質訊問을 3者가 하도록 合意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幹事會議 合意事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金東周委員이 民主黨을 代表해서 全斗煥 前大統領의 日海財團非理調查 마무리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證人出席을 정식으로 動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委員長立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前職大統領을 우리 本 特委 委員會에 證人으로 出席시킨다는 것은 이世上 萬物의 事案의 輕重이 있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案件이 되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우리 本 委員會가 全씨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추측도 또 사실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出席問題는 우리 委員會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설명처럼 우리 委員會에 各黨을 代表하는 幹事會議가 있으니까 幹事會議도 곧 이제 소집을 해서 運營問題 調查方向問題 事件處理問題 그 다음에 全斗煥 前 大統領出席與否問題 이런 것을 幹事會議에서 계속 論議하도록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金東周委員에게 委員長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가 되어서 幹事會議에서 꼭 全前大統領 出席要求를 論議해서 좀 나오도록 해달라. 요 線에서 대강 合意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日程은 이로써……

金東周委員 한마디만 하시고 기타 한마디……

○金東周委員 왜냐하면 이 5共特委는 與野가 없습니다. 우리 全體 委員會의 意見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또 委員長님이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黨 所屬이 되어서 제가 할 말을 다 못하고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번에 5共聽聞會에서도 여러 委員들이 深度있는 質問을 했지만 張世東씨는 입만 열면 國民이 불안해진다 고 하고 지금 현재 張本人인 全斗煥 前大統領은 爆彈宣言을 하니 안하니 이러니까 全國民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뭐가 된 지……

이래서 제가 委員長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委員長님과 各黨 幹事는 다음 우리 1次 幹事會議에서 이 문제를 深度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제 국민에게 다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委員長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감사합니다.

金命培委員 其他事項 한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金命培委員 새로 들어와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委員長님께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本 委員會에 文書檢證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檢證班의 文書檢證을 한 結果에 대한 모든 資料가 全委員들에게 배부되고 있

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첫째로 묻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난번에 聽聞會를 開催했는데 그 聽聞會의 結果記錄을 다시 말씀드리면 몇日 某委員이 무슨 내용의 質問을 했는데 證人이 그에 대한 答辯을 어떻게 했다 이것은 重要한 結果論입니다.

이것을 表로 해서 各 委員들에게 資料로 配付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기왕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라도 委員會 次元에서 그러한 資料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 두가지를 委員長님에게 묻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聽聞會 結果에 대한 記錄整理는 지금 事務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요약해서 委員들에게로 전달하기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文書檢證한 資料는 大體的으로 小委員들에게 다 돌아가셨지요?

○金東周委員 文書檢證書類는 各 黨에 다 갔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李聖浩委員 한 말씀 하세요.

○李聖浩委員 우리가 그 동안에 나홀에 걸쳐서 聽聞會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憲政史上 처음 한 聽聞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運營上에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그러한 希望事項들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委員會 本會議를 연 차례에 이 말을 委員長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4日째인 9日 그러한 마지막에 피차 어느 쪽도 의도하지 않은 時間때문에 쫓겨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本委員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幹事會議에서 合意本 巴와 같이 그 時間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전체 31名이라는 우리 委員님들의 發言의 機會均等を 위해서도 可及的이면 지켜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또 우리가 이번 運營을 함에 있어서 政黨順으로 發言을 했기 때문에 제가 調査해 본 結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나홀에 걸쳐서 議事進行發言을 제

외한 總 發言數가…… 委員長님을 빼면 서른분의 委員께서 訊問한 訊問總數가 188回입니다.

그중에서 民正黨이 열세분인데 31回를 해서 2·3回꼴로 했읍니다. 그리고 平民黨이 여덟분이 41回를 해서 5回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民正黨에서 發言을 제일 많이한 回數가 한분이 네번을 했읍니다. 그리고 平民黨에서 發言을 한분이 열일곱번까지 한 記錄을 제가 보았읍니다.

民主黨은 다섯분이 하셔서 42回를 했읍니다. 그래서 8回를 했읍니다. 그리고 發言을 제일 많이 한 委員은 한분이 열여섯번을 했읍니다.

新民主共和黨은 네분이 27回를 했읍니다. 그래서 한분이 平均 7回를 한 꼴이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열세번을 했읍니다. 無所屬의 한분은 다섯번을 했읍니다.

이것은 本會議에서 우리가 政黨別로 發言을 하고 政黨議席順으로 發言을 해서 發言 機會의 均等を 주는 것은 하나의 國會의 慣例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聽聞會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幹事會議에서 參考로 問題提起가 되어서 調整을 해주실 것을 委員長께 正式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상당히 參考로 할 말씀같습니다.

언제 그런 統計까지 다 냈어요? 個人이… 아주 참 좋은 資料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이 다 마쳐졌읍니다.

오늘은 散會를 宣布하겠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時28分 散會)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仁 泳	朴 道 球
徐 廷 華	辛 再 基	安 秉 珪
李 聖 浩	張 慶 宇	趙 庚 穆
黃 炳 禹	黃 潤 鎭	金 令 培
朴 相 千	梁 性 佑	李 東 根
林 春 元	趙 昇 衡	崔 洛 道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盧 武 鉉	沈 完 求	金 鍾 植
金 炫	鄭 一 永	崔 戊 龍
洪 熙 杓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宋 寶 圭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 員 會	舊 委 員	新 委 員	交 涉 團 體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 治權力型非 理調查特別	金 奉 旭 金 璉 鎭 朴 寶 實 許 京 萬 孫 周 恒	金 令 培 朴 相 千 梁 性 佑 李 東 根 崔 洛 道	平和民主黨 " " " "

(11月15日字)

○請願回附

1980年不法解職公職者의 名譽回復·復權 등 被害補償에  
관한請願

(10月11日 서울特別市鍾路區清進洞 300(강  
한빌딩 204號) '80不法解職公職者人權回復  
運動本部本部長 김형태의 35人으로부터 金  
東圭議員 沈完求議員 黃明秀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1980年 政府는 政府傘下團體에 勤務하고  
있던 公職者들은 法이 定한 節次와 方法  
을 무시한 一方的 措置로 解職시킨 바  
억울하게 被害를 입은 公職者들에게 名譽  
回復 復權 등 被害補償을 하여 달라는  
請願임.
2. 政府는 傘下團體公職者들에게 不法 非道  
德的으로 一括辭表를 強制로 提出받아 제  
비뽑기 投票 등이 方法과 私感 年齡 등  
을 理由로 一方的으로 解職시키고 私法審  
査權까지 막아 國民의 基本權을 制約하였  
음.
3. 解職教師의 復職 및 降等將星들도 名譽  
回復시키는 바 1980年 不當하게 解職된  
公職者들이 名譽回復·復權 등 被害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기를 願하는  
內容임.

10月19日字 回附됨.

三淸教育被害者 名譽回復 및 補償 등에 관한請願

(10月31日 忠淸北道忠州市校峴2洞593-4 류  
호로부터 李鐘根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請願人은 前職言論人으로서 強制로 三淸  
教育隊에 끌려가 3週間의 教育을 받고

釋放되었는 바 억울한 陋名에 대한 名譽  
回復과 被害補償을 바라는 內容임.

2. 請願人은 忠州文化放送社長으로 在職中  
1980年8月8日 原因도 모르는 채 三淸教育  
隊에 끌려가 3週間의 教育을 받고 釋放  
되었으나 釋放될 때까지 일체의 被疑事實  
에 관한 審問도 없이 造作된 犯罪事實을  
言論을 통해 發表하여 請願人의 名譽를  
毀損하였으며 以後 8年이나 지난 오늘날  
까지 住民登錄證에 特記番號를 기재하여  
社會生活에 막대한 支障을 주고 있는 實  
情임.
3. 請願人에 대한 名譽回復과 正當한 被害  
補償 및 不法行爲에 대한 關係者의 解明  
을 바라는 請願임.

11月2日字 回附됨.